|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징수율 통합 및 간소화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36호  국무원의 증치세 징수율 통합 및 간소화 결정에 의거, 유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국가세무총국의 고정업주의 임시 외출경영(外出經營) 관련 증치세 전용 발표 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발[1995]87호)중 ‘경영지역 세무기관이 6% 징수율로 징수한다’를 ‘경영지역 세무기관이 3%의 징수율로 징수한다’로 수정한다.  2. <국가세무총국의 경매업체가 취득한 경매수입에 대한 증치세, 영업세 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1999]40호) 제1조 중 ‘4%의 징수율로 증치세를 징수한다”를 “3%의 징수율로 증치세를 징수한다’로 수정한다.  3.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간이징수 정책 관련 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9]90호) 제1조 제(1)항 중 ‘간이방법에 따라 4% 징수율을 기준으로 50%로 감면 징수하는 증치세 정책’을 ‘간이방법에 따라 3% 징수율을 기준으로 2%로 감면 징수하는 증치세 정책’으로 수정한다.  4. <국가세무총국의 비(非)임상용 혈액 제공시 증치세 정책 문제에 관한 회답>(국세함[2009]456호) 제2조 중 ‘간이방법에 따라 6% 징수율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를 ‘간이방법에 따라 3%의 징수율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로 수정한다.  5. <국가세무총국의 일반납세자가 자가 사용한 고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의 증치세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1호) 중 ‘간이방법으로 4% 징수율을 기준으로 50%로 감면하여 증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를 “간이방법으로 3% 징수율을 기준으로 2%로 감면하여 증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6. 납세자가 간이방법에 따라 3% 징수율을 기준으로 2%로 감면하여 증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매출액과 납부세액을 확정한다.  매출액= 세금 포함 매출액 / (1+3%)  납부세액 = 매출액 \* 2%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간이징수정책 유관 관리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90호)의 제4조 제(1)항을 폐지한다.  7. 본 공고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6월 27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简并增值税征收率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36号  根据国务院简并和统一增值税征收率的决定，现将有关问题公告如下：  一、将《国家税务总局关于固定业户临时外出经营有关增值税专用发票管理问题的通知》（国税发〔1995〕87号）中“经营地税务机关按6%的征收率征税”，修改为“经营地税务机关按3%的征收率征税”。  二、将《国家税务总局关于拍卖行取得的拍卖收入征收增值税、营业税有关问题的通知》（国税发〔1999〕40号）第一条中“按照4%的征收率征收增值税”，修改为“按照3%的征收率征收增值税”。  三、将《国家税务总局关于增值税简易征收政策有关管理问题的通知》（国税函〔2009〕90号）第一条第（一）项中“按简易办法依4%征收率减半征收增值税政策”，修改为“按简易办法依3%征收率减按2%征收增值税政策”。  四、将《国家税务总局关于供应非临床用血增值税政策问题的批复》（国税函〔2009〕456号）第二条中“按照简易办法依照6%征收率计算应纳税额”，修改为“按照简易办法依照3%征收率计算应纳税额”。  五、将《国家税务总局关于一般纳税人销售自己使用过的固定资产增值税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1号）中“可按简易办法依4%征收率减半征收增值税”，修改为“可按简易办法依3%征收率减按2%征收增值税”。  六、纳税人适用按照简易办法依3%征收率减按2%征收增值税政策的，按下列公式确定销售额和应纳税额：  销售额=含税销售额/（1+3%）  应纳税额=销售额×2%  《国家税务总局关于增值税简易征收政策有关管理问题的通知》（国税函〔2009〕90号）第四条第（一）项废止。  七、本公告自2014年7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4年6月27日 |